

학생 생활 규정

제정 2014.12.26.
1차 개정 2015.03.12.
2차 개정 2016.04.01.
3차 개정 2016.07.20.
4차 개정 2018.10.11.
5차 개정 2020.02.17.
6차 개정 2021.12.08.
7차 개정 2023.12.14.
8차 개정 2024.04.24.
9차 개정 2024.10.17.
10차 개정 2025.04.10.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원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원동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제3항(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34호 제2026-3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바탕으로 학생생활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정의)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라,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1. “개별학생교육지원”이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⑥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여타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 (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인권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소유물 및 교사들 개인 소유물, 공동시설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 (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폭력예방 신고 방법에 따라 주변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1조 (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원하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제12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미술실, 강당, 도서관 등)을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 먼저 학교장 허가를 얻고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 (용의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단, 다른 학생의 수업에 방해되는 크기와 소리가 나는 악세사리 및 노출이 많은 복장은 지양한다.
-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활동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③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실내·외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 ④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⑥ 두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⑦ 학생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색깔이 있는 화장품 사용은 지양하고, 자외선 차단제, 무색 입술보호제는 허용한다. 학교 행사에 따른 허용 범위는 당해연도 학년 담임교사 및 학생간의 협의에 따른다.

제14조 (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1인 1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 내 봉사활동(1인 1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5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④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6조(의사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 ⑤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 ⑥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1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8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법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 ②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도록 노력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 ⑨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0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자기정보결정권(정보의 열람, 복사, 수정, 삭제요청권)을 보장한다.
- ⑨ 계정을 만들 때에는 가입연령을 확인하여 연령에 알맞은 온라인 활동을 한다.

제21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는 휴대전화의 소지는 허용하며 학교 건물 내에서는 휴대 전화기의 전원을 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한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학생은 학교에 등교한 직후부터 하교 시(조·종례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방과후 교육활동)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며 전원을 종료하여 가방에 보관하여야 한다.
 - 1.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 2.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 3. 노트북, 태블릿PC, 게임기 등 문서·영상·콘텐츠의 제작·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

4. 그 밖에 인터넷 접속, 스트리밍, 촬영·녹음·저장·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③ 학생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가방에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형 전파차단 파우치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 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 ⑦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2조 (회원)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3조 (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학교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밝히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과 운영, 독립적 활동 보장을 위한 공간과 예산의 확보 등 학교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4조 (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불우학우 및 불우이웃 돕기 활동

제25조 (운영) 4~6학년은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을 월1회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① 학생자치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③ 학생자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학생자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26조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은 학급회장 1인, 부회장 1인으로 한다.

제27조 (부서) 학급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예부: 학습 및 예능 활동
2. 환경부: 학교 환경 미화 및 자연보호 활동
3. 체육부: 체육행사 및 보건위생
4. 도서부: 도서에 관련된 모든 일
5. 정보부: 정보통신 윤리와 방송에 관한 일

제28조 (직무 및 선출) 학급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급 자치회를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④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의 임원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⑤ 학급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⑥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9조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 학생자치회를 둔다.

- ① 구성: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된다.
- ②기능: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활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3장 학생 생활지도

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30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③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31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②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③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32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②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33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②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③ 비행 및 범죄 예방
- ④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
- ④⑤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된 분야

제34조 (사생활의 비밀)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힘쓴다.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③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35조(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①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소속 학생의 문제 개선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②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⑤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을 하는 경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예의를 지키고, 사용하는 구어와 문장은 경어를 사용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어진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38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9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8조(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5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37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자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방해행동 학생에 대해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문제행동 개선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학생행동 체크리스트에 3개 항목 이상 체크된 경우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① 담임이 학부모 연락 (전화 > 문자) ② 교무실 연락 > 교직원 연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수업방해 학생행동 5가지 (해당 시간 내에 3가지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소리내기 (잡담, 잡음 등)	공격적인 말 (고성, 욕설 등)	공격적인 행동 (친구, 교사에게 위해, 위협이 되는 행동, 물건 투척 등)	차라 이탈	지시 불이행 (교육활동 거부 등)

- ⑥ 학교의 장은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실시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보호자가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이후의 수업에 대해서는 미인정 조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⑧⑤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 자유를 가진다.
- ⑨⑥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자제한다.
- ⑩⑦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⑩⑧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람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교사가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신체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 동성의 교사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한다.
- ⑩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37조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3.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4.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5. 그 밖에 건전한 학교생활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물품
 6. 폭발물,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37조 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2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3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유사흉기(흉기모형 등)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7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3-5항의 경우 발견 즉시 분리 보관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 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7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4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5	건전한 학교생활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6	폭발물,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	영구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후 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㉞⑩ 교원은 제5항 제3호·제4호 및 제11항 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㉞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

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35조에 따른 조언, 제36조에 따른 상담, 제37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38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①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0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3절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제41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절 기타

제42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이의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

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4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본 특례 운영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른다.

제45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즉시 수업에 다시 참여시켜야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 ③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학년연구실, 2층 협의실, 상담실, 민원면담실, 교장실 등)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
- ④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한다.
- 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
- ⑥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 전문상담교사,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교장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봉사자 등 보조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⑦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 ⑧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 (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⑨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⑪ 제5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실시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보호자가 학생 인계를 요청한 경우 이후의 수업에 대해서는 미인정 조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⑫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의 고의성, 가정학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실 내 및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생활지도	요건	개별학습 교육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교실 내 지정자리 이동	교육활동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교 육활동을 방해하는 행 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 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혹은 지정된 위치 (수업 시간 내 일부)	지정된 좌석 및 위치 로 이동하도록 지시, 문제행동 개선 후 복 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또는 상담, 교과 연계 학습자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교실 밖 별도 공간	① 교실 내 지정된 자리 로 이동을 거부하거나 이동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또는 ② 고성 또는 폭력적 언 행 등의 소란행위 등 으로 교육활동을 심각 하게 방해하는 경우	2층 협의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①담임이 학부모 연락(전화→문자) ②교무실 연락→ 교직원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개별학습교육지원 배정된 교원이 학 습 지원)	상담 또는 행동성찰문, 교과 연계 학습자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실외 교육 활동 시 학습집단과 분리된 자리	① 교육활동 중 2회 이 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 속하는 경우 ② 고성 또는 폭력적 언 행 등의 소란행위 등 으로 교육활동을 심각 하게 방해하는 경우	교사가 학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 지정된 장소 (교육활동 시간 내 일부)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학생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 -상황에 따라 교무실 등 학생 인계를 요 청하거나 실외 교육 활동 장소 인력 등 에 도움 요청	상담 또는 교육활동 관련 학습 과제 부여 또는 이동한 자리에서 교육활동 참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은 2층 협의실로 인계되며, 생활지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위클래스에서 상담교사의 상담을 받고 개별학생교육지원 교원에게 인계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대별로 교원이 분담하는 방식을 정하여 실시함. * 개별학생교육지원 종료 후에는 학생의 정서 안정과 원활한 학급 복귀를 위해 간단한 복귀지원 절차를 실시함. 담당 교직원은 학생과 간단히 대화하며 정서행동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상담 후 복귀 시킴. 지원 내용과 학생의 상태를 담임(또는 교과 교사)에게 공유하며, 교사는 학생의 수업 적응을 관찰 지원함. * 특수 교육 대상자의 경우 장애정도와 문제행동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교사와 협의하여 분리 방법 결정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4조제46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제47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제18조 (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6조의 운영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6조제48조 (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시험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선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제47조제49조 (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8조제50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심의
-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다만,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규정을 따른다.)

제49조제51조 (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

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해당 학년부장, 해당 담임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제50조제52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1조제53조 (운영)

- ①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안 발생
 2.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3. 위원회 개최 준비
 4. 위원회 개최·진행
 5. 심의 결과 확정
 6.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결정 통지 포함내 용(서면 통지)
 7. 조치 이행·보고
- ②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 사안에 대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⑥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52조제54조 (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제55조 (간사)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54조제5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5조제57조 (선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고 1-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5호 교내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교내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6조제58조 (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사회봉사
 - 1.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다.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4.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 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다.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 회복적 생활교육프로그램

1. 하루 4시간 이내, 4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부득이하게 수업시간 내에 운영할 때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
3.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필요한 선도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 시간 및 방법은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7조제59조 (선도의 기준) 학생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영역	항	위반 행위 내용	징계 구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준법	1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강사포함)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	○	○	○
	2	학교 게시물,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	○	○	
	3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4	교내·외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예절	5	타인에게 언행이 불손하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6	언행 불량으로 주인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교육 활동	7	수업시간 중에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8	교육활동(수업, 행사 등)을 무단 거부한 학생	○			
	9	교육활동(수업, 행사 등) 거부를 주동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10	수업 시간 중 지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	○	○	
	11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2회이상 분리조치가 되었으나 개선이 어려운 학생	○	○	○	
근태	12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학생	○			
	13	무단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14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를 연속 5일 이상 또는 비연속 10일 이상 하는 학생	○	○		
약물	15	음주 또는 흡연을 한 학생	○	○	○	○
	16	마약, 본드,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
퇴폐 행위	17	도박을 한 학생	○	○	○	○
	18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19	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놀이를 한 학생	○	○	○	○
	20	학생으로서 불건전한 취업 행위를 한 학생	○	○	○	○
사이버	21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망법(사용연령, 저작권 등)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학생 생활	22	흥기를 휴대하거나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학생	○	○	○	○
	23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24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제58조제60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제61조 (이의제기)

- ①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통보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로 계산하여 5일 경과일까지 재심의 받도록 안내. 이 때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60조제62조(재심의)

- ① 재심의 신청인용시 위원회에서 재심을 실시한다.
- ②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사항
 - 1.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2.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 ③ 학부모의 재심의 청구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61조제63조 (사안설명)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 결정 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2조제64조 (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63조제65조 (선도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66조 (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5조제67조 (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선도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66조제68조(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67조제69조(행정소송 제기)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5장 개정 방법

제68조제70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교원 위원 3명, 학생 3명, 학부모 2명, 전문가 1명, 총 9명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

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④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제71조 (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학교장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0조제72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1조제73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2조제74조 (공포 및 정보 공시)

- ① 학교장은 최종안을 공포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73조제75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74조제7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75조제77조 (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새 학년도 매해 시작기(3월 1일자) 기준부터 시행된다. (그 외, 필요시 중간 개정사항 발생시, 당해에 개정심의회 확정 후에 지정 공포일로부터 자동으로 시행 적용됨)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고시 제8조제5호, 제12조제5항, 제18조, 제19조 및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